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(문기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2201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3. 12. 1.

발 의 자: 문기호, 김태욱, 박경흠,

이명녀, 홍영진, 정재환,

문희성, 김도운, 강혜순,

안영호

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다.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 설치(안 제6조)
- 마. 위탁(안 제7조)
-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- 4. 관련법규: 「관광기본법」제6조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3. 11. 23. ~ 11. 30.(7일간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(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야간관광"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,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.
 - 2. "야간관광사업"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, 숙박, 음식, 운동, 오락,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.
- 제4조(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 - 1.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
 - 2.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

- 3.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- 4.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
- 5.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
 - 2.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
 - 3.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
 - 4.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
 - 5.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
 - 6.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
 - 7.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 - 3.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

- 24 (제260회-행정자치위제8차부록)
 - 4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」
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- 제7조(위탁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포상)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규

□「관광기본법」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협조)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4호
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- 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- 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첚부 사유

○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 불가

3. 작성자

○ 소 속: 문화관광과

○ 직 급: 행정7급

○ 이 름: 윤수경

○ 연락처: 052-290-3692